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(대학) 적용사항 안내

1. 관련

- 가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7판, '23.1.27.접수)
- 나.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(학생건강 정책과-488, '23.1.27.)

2.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「**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7판)**」를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. ※ [붙임2] 참조

3. 이와 관련,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우리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[붙임1]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**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1.30.(월)부터 원활히 시행**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붙임] 파일에서 표기되어있는 학교의 범위에는 유치중고등학교 외에,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포함

4. 특히, 이번 안내사항은 **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**드리는 것이며 **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** 대하여는 **현행 대학 방역체계**(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우리부가 수립한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*(제7판, '22.9.26.)」)를 **유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*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7판)」는 새학기 시작 전 개정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

붙임 1.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부.

2.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국립대학교, 국립대학법인, 국립교육대학교, 공립대학교, 사립대학교, 대학원대학교

주무관 이근우 행정사무관 김동석 대학운영지원과 전결 2023. 1. 27.
장 김홍순

협조자

시행 대학운영지원과-854 (2023. 1. 27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(어진동), 정부세종청사 14-2동 431 / <https://www.moe.go.kr>
-2호

전화번호 044-203-6932 팩스번호 044-203-6991 / ignuignu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